

》》》 컨테이너 적재 확인 점검하다 추락

업종	항만업
기인물	바닥
생산품	부두관리용역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00항 선식에 접안한 00호의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1번 홀더와 2번 홀더 사이 통로에서 신호를 하기 위하여 홀드 아래로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9.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00항 42번 선식에 접안한 00해운 소속의 00호의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번 홀더와 2번 홀더 사이 통로에서 신호를 하기 위하여 홀드 아래로 쳐다보다가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홀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미설치
- (2) 안전대 또는 안전벨트 미착용
-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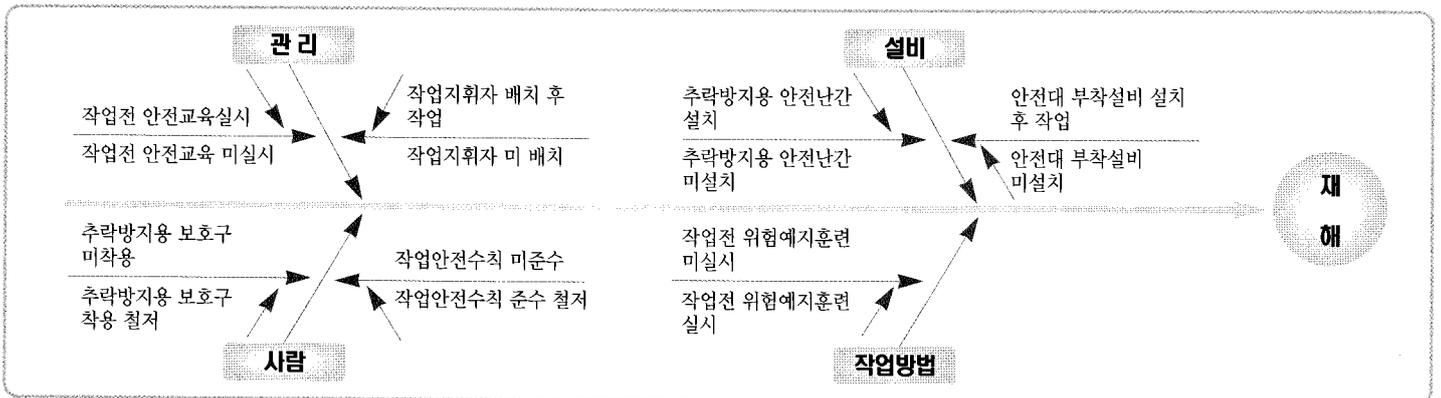
-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설치
- (2) 안전대 및 안전벨트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3)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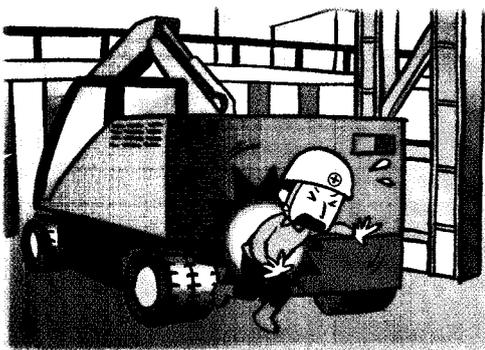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소제 청소 작업중인 굴삭기(백호)와 충돌

업종	제강압연업
기인물	굴삭기
생산품	청소용역
재해유형	충돌
피해정도	인적 사망 1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OO제강 제강부 전기로 1기 앞 작업장에서 연소제 청소작업을 마치고, 후진을 하던 굴삭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제강부 전기로 1기 앞 작업장에서 연소제 청소 작업을 마치고 후진을 하던 굴삭기를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면서 넘어져 무한궤도에 깔려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 내용 교육 미실시
- (2)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주의 태만
- (3) 보행시 좌, 우, 전방 위험상황 미확인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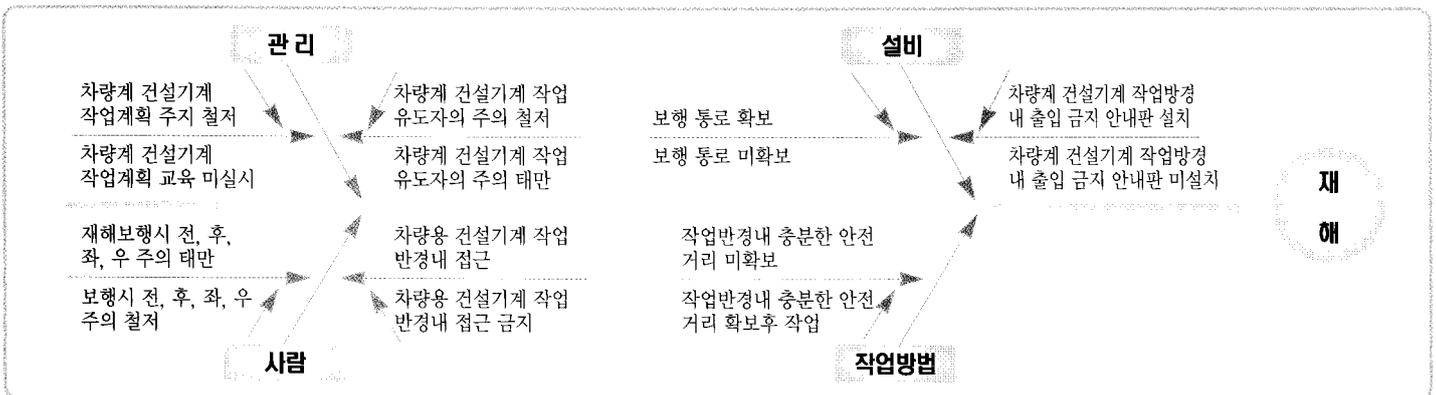
-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의 내용 주지 교육 실시
- (2)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주의 철저
- (3) 보행시 좌, 우, 전방 위험상황 확인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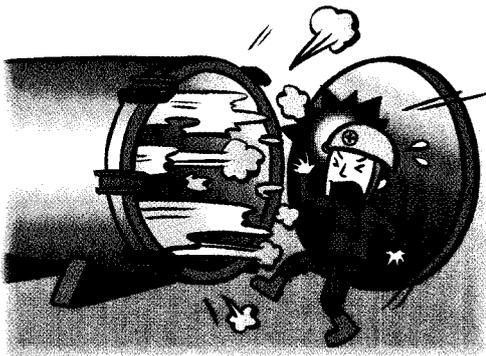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레토로토 파우치 살균기계 파손에 의한 화상

업종	식품제조업
기인물	레토로토 파우치 살균기
생산품	면류, 떡류
재해유형	이상온도(고온) 접촉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짜장 소스를 포장하는 레토로토 파우치 살균기계의 잠금장치 축이 빠지면서 도어가 열려 내용물인 열수와 증기가 분출되면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피해자가 화상 등으로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살균기 도어의 중앙부 홀(Hole)에 결합된 잠금장치 축이 고정용 볼트로 결합되어 있으나 잠금장치의 축을 고정하는 볼트, 너트의 나사산이 마모되어 결합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토로토 파우치 살균기계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정볼트 체결부가 빠져 잠금장치의 축이 튀어나오고, 이로 인해 도어가 개방되어 고온의 열수와 증기가 분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피해자가 화상 등으로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설계검사, 성능검사 미실시
- (2) 안전고리 제작 불량
- (3) 잠금장치의 축을 고정하는 볼트, 너트의 나사산이 마모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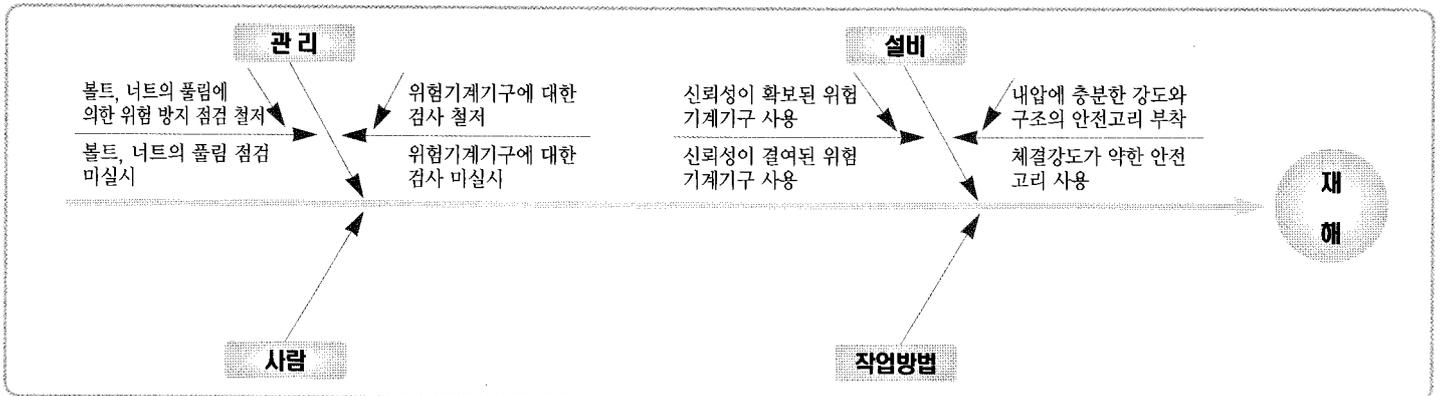
- (1) 설계검사, 성능검사를 마친 안전한 기계사용
- (2) 내압에 충분한 강도와 구조의 안전고리 부착
- (3) 볼트, 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 방지 위해 점검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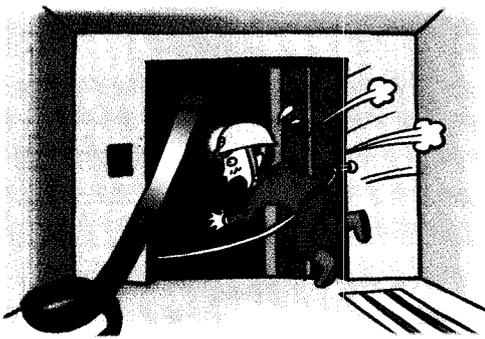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엘리베이터 카운터케이스에 웨이트를 투입하던중 추락

업종	건설업
기인물	바닥
생산품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피재자가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카운터케이스에 웨이트를 투입하는 작업중 벽체에 감아놓은 로프가 카운터 웨이트의 하중이 지누르자 갑자기 풀리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는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각층으로 운반 후 하부에 Car Cage 조립작업을 실시하던 중 웨이트를 케이스에 넣자 벽체 Flat Tie 상에 감아놓은 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47m)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마닐라로프를 안정된 고정점에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하나 Flat Tie에 불안정하게 고정
- (2)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3) 안전대 미착용

나. 예방대책

- (1) 마닐라로프를 안정된 고정점에 확실하게 고정
-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3) 안전대 착용 후 작업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